

서울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2나20111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2나201111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가합11556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최승민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찬

변론종결 2022. 8. 24.

판결선고 2022. 9. 28.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가합11556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218,306,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과 피고 C, D 사이에 인천 남구 F 대 169㎡에 관하여 2016. 9.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18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11행의 “폐전자제품”을 “폐전자제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0행의 “피고는”을 “피고 B은”으로, “피고가”를 “피고 B이”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2행의 “벗어난다.”를 “벗어난다(피고 C,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 X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면서 변론종결 후 X의 사실확인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공인중개사의 소개 등이 아닌 피고 B의 매매계약 당일 아침 전화연락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통상의 거래관념에 어긋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3행의 “2017. 9. 7.”을 “2016. 11. 3.”로, 7행의 “의심이 든다.”를 “의심이 든다(피고 C, D은 위 통화를 2017. 9. 7.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통화는 2016. 11. 3.에 이루어졌고 다만 그 녹취서가 2017. 9. 7.에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통화내용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 D이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8행의 첫머리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갑 제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2016. 10. 7.임에도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피고 C, D이 잔금지급을 위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6.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C, D이 계약상 잔금일이 지난 2016. 10. 10. 주식회사 Y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2016. 10. 12.에야 잔금 명목으로 83,6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 B은 매매대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피고 C,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를 서둘러 마쳐준 후 그 잔금마저 피고 C, D의 편의에 따라 수령하는 등 피고들은 통상의 매매계약당사자의 태도와 다르게 행동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이재영, 판사 김경란